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정폭력범죄 등에 관한 대응교육 실시 의무화〉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63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전진숙의원 등 10인

나. 제안연월일 : 2025. 11. 21.

다. 회부월일일 : 2025. 11.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 미흡으로 인해 피해자가 재차 폭력과 보복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이 현장 출동 시 피해자의 위험 정도를 즉시 판단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전문성·감수성·절차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여러 사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폭력 및 스토킹범죄 대응이 전문화된 경찰 교육체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신속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

련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제2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에게 가정폭력 범죄, 스토킹범죄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2조의2(가정폭력범죄 등에 관한 대응교육 실시)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현행	개정안
	<u>방법·절차·대상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및 스토킹범죄 신고 접수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관계성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장 대응 역량 및 피해자 보호 역량 확보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가정폭력 및 스토킹범죄 신고 건수 추이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 10월
가정폭력 112신고(건)	225,609	230,830	236,647	238,518
스토킹범죄 112신고(건)	29,565	31,824	31,947	37,123

※자료: 경찰청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22조제1항), 가정폭력·스토킹 대응과 같은 특정 영역의 전문적·정기적 교육을 의무화하는 개별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¹⁾

1) 「경찰공무원법」

제22조(교육훈련)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신속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경찰의 현장 대응력 제고 및 피해자 보호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다만,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포괄적 근거를 이미 두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경찰청은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전문·현장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²⁾.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정 범죄 유형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법률에 명시할 실익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아울러, 경찰공무원 교육은 범죄 양상 변화, 현장 여건, 조직 운영 상황 등에 따라 교육 대상·내용·방식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필요성이 큰 영역인바, 개정안과 같이 특정 교육의 정기적 실시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방식은 교육 운영의 유연성을 저해할 우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경찰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경찰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스토킹 대응과 관련하여 여청 담당자, 현장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기초·심화·현장 중심 교육과정 및 상시 OJT 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음(검토 보고서 참고자료 [현행 교육훈련 실시 현황] 참조).

갖는 「경찰공무원법」에 특정 범죄 대응 교육 의무를 규정하기보다는, 해당 범죄를 직접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서 교육 대상과 범위를 직무 관련성을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보다 적절하다는 견해도 제기될 수 있음. 실제로 스토킹범죄 및 가정폭력 관련 개별 법률에서는 전담 인력 또는 사건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 실시 규정을 두고 있음.³⁾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교육 의무 규정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점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제2항의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스토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방지법)」

제5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법사위 계류 중 ('25.10.10. 민형배 의원 발의)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대응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교육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사건 담당자·전담부서·현장 대응 인력 등 직무 관련성이 높은 범위를 중심으로 교육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아울러,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일반적 교육훈련의 근거는 「경찰공무원법」에 두되, 가정폭력·스토킹 등 개별 범죄 유형별 교육에 관한 사항은 해당 개별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44

<참고자료>

교육과정명	교육 내용	교육 대상	교육 시간	주관
가정폭력·학대대응 실무과정	가정폭력 관련 법령·조치·절차 등 업무 전반 이해	경찰서 여청기능 가정폭력·학대 담당	2일	시도청 교육센터(기초)
가정폭력·학대 예방전문과정	가정폭력 관련 법령·조치·절차 등 업무 전반 이해	경찰서 여청기능 가정폭력·학대 담당	1주	경찰인재 개발원(심화)
가정폭력·학대 예방심화과정	가정폭력 관련 매뉴얼, 법령 이해를 통한 실무능력 향상 APO 시스템 활용방법 이해 및 습득	경찰서 여청기능 가정폭력·학대 담당	1주	경찰인재 개발원(심화)
가정폭력·학대예방 강사양성과정	가정폭력·학대 신고 접수 및 수사연계, 피해자 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가정폭력·학대 대응 과정 동료강사 활동 희망자	4일	경찰인재 개발원
피해자보호팀 전문 위탁교육	관계성 범죄 법률 및 판례, 피해자면담 기법 등	피해자보호팀	1주	경찰청
사회적약자 보호 역량 강화 과정 (국외 위탁교육)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법·제도 및 경찰 대응체계 비교연구	여청·지역경찰 전문가	4주	경찰청
스토킹대응실무과정	스토킹·교제폭력 범죄 특성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 업무 전반 이해	경찰서 여청기능 스톱킹 담당(특히 신규발령자)	1일	시도청 교육센터(기초)
스토킹·교제폭력대 응심화과정	스토킹 법령 및 판례 분석, 유형별 콜백 실습 등 실무 전반	스토킹·교제폭력 담당 2년 미만 근무자	5일	경찰인재 개발원(심화)
스토킹·교제폭력 담당 전문화 위탁교육 과정	여성폭력의 이해, 가피해자 심리, 모니터링 실습 등	스토킹 담당 중 장기근무자(1년이상)	5일	경찰청
스토킹·교제폭력대 응강사양성과정	스토킹·교제폭력 범죄 이해, 업무처리 절차 개관, 강의 시나리오 구성 및 발표 등	스토킹대응실무과정 동료강사 활동 희망자	5일	경찰인재 개발원
현장실무III(여성·청소년)	관계성 범죄·민감사건 현장 조치요령, 피해자 보호 및 회복적 사법의 이해, 현장사례별 수사서류 작성실습 등	순찰팀장, 순찰팀원	2일	시도청 교육센터 (기초)
현장전문가III(여성·청소년)	아동학대범죄 현장사례 연구,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식, 스톱킹 초동조치 및 2차 피해 예방 등	순찰팀장, 순찰팀원	5일	경찰인재 개발원
OJT 교육	지역경찰 근무시간 중 법령·매뉴얼·현장 사례 등 활용, 경험·지식을 공유·토론 ※ 「지역경찰 LIVE」 소식지, 내부망을 통해 교육자료 상시 배포	지역경찰 팀장의 진행으로 팀원들과 토론	상시	지역관서